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15
------------	-------

발의연월일 : 2018. 9. 13.

발의자 : 박홍근 · 임종성 · 고용진

박재호 · 김병관 · 변재일

남인순 · 우원식 · 박광온

송갑석 · 김해영 · 신경민

권칠승 · 전현희 · 이춘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5호).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u>저소득층</u> 등 <u>주거취약계층</u>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 -----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p>7. <u>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8. ~ 10. (생략) ② ~ ⑧ (생략)</p> <p>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생략) ③ ~ ⑥ (생략)</p>	<p>7. <u>주거지원필요계층</u> ----- ----- ----- -----</p> <p>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 ----- <u>주거지원필요계층</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